

2026. 10.

미국 소니뮤직퍼블리싱·워너채펠, 앤트로픽의 가사·악보 이용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소장

김현숙

1. 개요

2026년 8월 28일 소니뮤직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채펠 뮤직(Warner Chappell Music) 등 음악출판사 35개사가 앤트로픽(Anthropic PBC)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 및 벤저민 만(Benjamin Mann)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¹⁾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가사와 악보를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취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Claude)의 학습과 출력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복제 자료의 취득, 가사의 출력, 권리정보의 삭제를 학습과 별개의 침해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AI 저작권 분쟁의 쟁점이 학습을 넘어 데이터 취득과 출력 단계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앤트로픽은 2025년 Bartz 사건에서 도서를 모델 학습에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았으나, 불법복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도서로 중앙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행위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후 저자들과 15억 달러 규모로 화해하였다.²⁾ 이 사건 소장은 그 소송에서 드러난 토렌트 이용 사실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콩코드 뮤직 그룹, ABKCO 등이 2023년 10월 약 500곡, 2026년 1월 2만 곡 이상에 관하여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하였고, 3월에는 BMG가, 8월에는 라운드힐 뮤직이 뒤를 이었으며,³⁾ 이번 소송으로 3대 메이저 음악출판사가 모두 소송에 나섰다. 앤트로픽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Bartz 법원의 판단대로 AI 학습은 변형적 공정이용이라는 입장이다.⁴⁾ 이하의 사실관계는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이다.

2. 주요내용

1) 원고 측의 주요 주장

1) Sony Music Publishing (US) LLC et al. v. Anthropic PBC et al., No. 5:26-cv-09217 (N.D. Cal.), Complaint and Demand for Jury Trial, ECF No. 1 (Aug. 28, 2026) (이하 “소장”).

2) Bartz v. Anthropic PBC, 787 F. Supp. 3d 1007 (N.D. Cal. 2025), ECF No. 231 (June 23, 2025)(이하 “Bartz 공정이용 결정”); 같은 사건, No. 3:24-cv-05417-AMO, ECF No. 680 (July 20, 2026)(이하 “Bartz 최종 승인 결정”).

3) Concord Music Group, Inc. et al. v. Anthropic PBC, No. 5:24-cv-03811-EKL (N.D. Cal.)(이하 “콩코드 제1사건”); Concord Music Group, Inc. et al. v. Anthropic PBC et al., No. 5:26-cv-00880-EKL (N.D. Cal.); BMG Rights Management (US) LLC v. Anthropic PBC, No. 5:26-cv-02334-EKL (N.D. Cal.); Round Hill Music LP v. Anthropic PBC, No. 5:26-cv-08505 (N.D. Cal.).

4) Corbin Bolies, “Sony Music Publishing, Warner Chappell Allege Anthropic Launched ‘Brazen Campaign’ to Illegally Train Claude on Copyrighted Songs in New Lawsuit”, Variety, 2026. 8. 31.자, <<https://variety.com/2026/music/news/sony-music-publishing-warner-chappell-anthropic-lawsuit-1236847442/>> (2026. 9. 30. 검색).

원고들은 자료의 취득·보관, 학습·출력, 권리정보 처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6월 피고 만이 비트토렌트(BitTorrent)로 LibGen에서 500만 권 이상을, 2022년 7월에는 다른 직원들이 PiLiMi에서 200만 권 이상을 내려받았고 그 가운데 원고들의 가사와 악보가 수록된 노래책과 악보집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비트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다른 이용자에게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권과 배포권을 함께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⁵⁾ 취득 경로는 불법복제 도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소장은 MusixMatch와 LyricFind처럼 이용허락을 받아 가사를 표시하는 사이트에서의 크롤링과 스크래핑, Common Crawl·The Pile·Books3 등 제3자 데이터세트의 이용, 중고 종이책을 해체하여 스캔한 뒤 폐기하는 이른바 파괴적 스캔을 함께 문제 삼았다. 원고들은 이렇게 취득한 자료를 모델 학습과 미세조정 과정에서 반복 복제하였다고 하면서, 별지에 제시한 수만 곡이 모두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기재하였다.

출력 단계에서는 클로드가 원래 가사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문구를 제공하고, 특정 작사자나 곡의 스타일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기존 가사를 옮긴 결과물을 내놓으며, 특정 가사를 요구하지 않은 요청에도 원고들의 가사를 섞어 넣는다고 주장한다. 미세조정 기록에 가사를 요구하는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검토자가 정확한 가사를 낸 응답을 선택하고 부정확한 응답을 배제하여 모델이 가사를 그대로 재현하도록 유도되었다는 것이다. 가사 재현을 막는 안전장치도 같은 요청을 다시 입력하면 우회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저작권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이하 “CMI”)의 제거와 변경을 문제 삼는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곡명, 작사·작곡자 이름, 저작권 고지 등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하였고, 가사를 재현한 출력물에도 해당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원고들은 엔트로픽이 웹페이지에서 학습용 텍스트를 추출할 때, 저작권자 이름과 저작권 고지가 남는 도구 대신 이를 잘 제거하는 도구를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택 경위를 저작권관리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2) 청구의 법적 구성과 구제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은 네 가지다. 첫째는 모든 피고의 토렌트 이용에 따른 복제권·배포권 직접침해책임이다. 둘째는 아모데이와 만 개인에 대한 토렌트 이용에 대한 기여침해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이다. 셋째는 엔트로픽에 대한 청구로 스크래핑, 제3자 데이터세트 이용, 파괴적 스캔, 학습, 가사의 재현, 시장 대체물의 생성, 무단 2차적저작물의 생성을 일곱 가지 이용행위로 열거하며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배포권, 공개전시권⁶⁾ 침해를 주장한다. 넷째는 엔트로픽에 대한 CMI 제거·변경 책임이다.

5) 소장에서 말하는 배포권은 복제물을 판매 등 소유권 이전, 대여 또는 대출로 공중에게 배포할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3)의 권리이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다른 이용자의 복제를 위해 검색 색인에 파일명을 올린 행위를 배포권 침해로 보았다(A&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 1014 (9th Cir. 2001)). 다만, 우리 법의 배포는 유형물인 원본·복제물의 양도·대여를 전제하므로(제2조 제23호), 토렌트 시당은 제20조의 배포권이 아니라 전송(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여 제18조의 공중송신권 문제가 된다. 이하 배포권은 미국법상 권리를 가리킨다.

6) 미국의 공개전시권은 어문·음악저작물에도 인정되지만(17 U.S.C. § 106(5)), 우리 저작권법 제19조의 전시권은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사에는 미치지 않는다.

구제로는 침해금지, 학습 데이터와 수집·처리 방법에 관한 내역 제출, 침해복제물의 폐기, 변호사보수의 지급을 구하고 배심재판도 요구하였다. 금전적 구제로는 고의 침해를 전제로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와 CMI 위반행위당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를 대신하여 실제 손해와 그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침해자 이익의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하고 있다.

3) 선행 결정·화해의 범위와 데이터 취득·학습의 구분

쟁점은 Bartz 결정이 나눈 학습과 불법 취득의 구분이 이 사건에서도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판단하지 않은 가사 출력, 개인책임, 권리정보 삭제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이다. Bartz 결정은 구입한 종이책을 폐기하고 재배포하지 않는 디지털 대체본으로 전환한 이용도 공정이용으로 보았으나, 불법복제 도서로 구축한 중앙 라이브러리에 관하여는 이후 책을 구입하였더라도 앞선 불법 취득의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⁷⁾ 이는 중앙 라이브러리 구축을 학습과 구별하여 평가할 근거가 된다.

Bartz 화해는 대상 목록에 포함된 도서의 과거 토렌트 이용·스캔·보관·학습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이 사건의 노래책·악보집 관련 토렌트 청구도 해당 도서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이 화해 대상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화해의 영향을 받는다.⁸⁾ 반면 가사 사이트에서의 스크래핑과 가사 출력에 관한 청구는 화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트로픽은 토렌트로 취득한 도서를 상용 클로드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원고들은 이는 학습을 좁게 정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불법복제 자료로 학습한 비상용 모델이 만든 합성데이터가 상용 모델의 학습에 투입되었고 그 비상용 모델이 상용 모델에 강화학습 피드백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후속 학습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추가 복제가 발생하였는지와 그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4) 가사 출력의 침해 여부와 시장 영향

Bartz 사건과 이번 소송의 주요 차이는 출력물이다. Bartz 사건에서는 출력물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없었고 법원도 그 전제에서 학습 이용과 시장 영향을 평가하였다. 반면 이번에는 원래 가사의 재현과 2차적저작물의 생성을 직접 문제 삼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출력물이 보호되는 표현을 어느 정도 재현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표현의 복제와 추상적 스타일의 모방은 구분되며, 특정 작사자와 비슷한 분위기의 가사가 생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시장 영향에 관하여 원고들은 가사가 그대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적법한 가사 서비스를 찾지 않게 된다는 직접적 대체와, AI가 생성한 가사를 사용한 곡이 기존 곡과 경쟁하여 스트리밍 사용료의 배분 몫을 줄인다는 시장 희석을 둘 다 주장한다. 후자는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출력물이라도 같은 종류의

7) Bartz 공정이용 결정, 법원 원문 31-32면.

8) 구성원은 목록에 오른 도서의 복제권자 가운데 집단에서 유효하게 제외되지 않은 자이다. Bartz 최종 승인 결정, 3, 7, 9-12면.

저작물과 경쟁하여 로열티 배분 몫을 줄일 수 있다는 미국 저작권청의 시장 희석에 관한 견해를 근거로 한다.⁹⁾ 반면 Bartz 법원은 일반적인 경쟁의 증가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시장 침해로 보지 않았으나, 같은 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내린 Kadrey 결정은 시장 희석이 제4요소에서 결정적일 수 있다고 보아 판단이 엇갈린다.¹⁰⁾ 원고들이 맺은 AI 이용허락 계약도 제4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계약의 존재만으로 공정이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5) 공동창업자의 개인책임과 CMI 제거·변경

개인 피고에 대해서는 공동창업자라는 지위보다 구체적인 관여 행위가 쟁점이다. 원고들은 만이 LibGen 토렌트를 직접 실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PiLiMi 토렌트를 지시하였으며, 아모데이가 새로운 데이터세트의 취득·사용에 대표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내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연방대법원은 2026년 Cox 판결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기여침해에 관하여, 침해에 이용된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를 유도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¹¹⁾ 이 사건에서는 직접침해에 대한 각자의 관여 행위와, 기여침해에 대한 지시·승인의 내용이 쟁점이다.

CMI 청구는 저작권 침해청구와 성립요건이 다르다. 제1202조(b)는 권한 없는 고의적 제거·변경과 그 사실을 알면서 하는 배포·공연 등을 금지하되, 그 행위가 침해를 유발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한다는 인식을 요구하고 민사구제에서는 이를 알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출력물에 작사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원래 수반된 정보를 삭제하였는지와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출 도구의 선택 경위에 관한 주장은 이 고의와 인식 요건에 관련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생성형 AI의 음악저작물 이용을 학습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데이터의 취득과 보관에서 출력과 권리정보 처리까지 나누어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학습 이용에 공정이용이 인정되더라도 자료 취득이나 가사 출력까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콩코드 제1사건의 공정이용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이용허락 없는 AI 학습에는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이때 불법복제물에서 자료를 취득한 사정을 제2항 제1호의 이용 목적·성격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할지가 먼저

9)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Pre-Publication Version (May 2025), pp. 64-65; 소장, 위 제 136, 150.

10) Bartz 공정이용 결정, 법원 원문 28면; Kadrey v. Meta Platforms, Inc., 788 F. Supp. 3d 1026 (N.D. Cal. 2025), ECF No. 598, 법원 원문 27-28, 31-34면. 다만 Kadrey 법원도 원고들이 시장 희석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해당 사건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하였다.

11) Cox Communications,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607 U.S. ____ (2026), No. 24-171, slip op. at 7-9 (Mar. 25, 2026).

문제되고, 제4호의 시장 영향 판단에서는 적법한 가사 서비스의 대체와 비침해적 생성물이 가져오는 경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권리관리정보에 관하여 제104조의3 제1항은 고의의 제거·변경 등과 무단 제거·변경 사실을 알면서 하는 배포·공연·공중송신 등을 금지하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 권리관리정보를 일괄 삭제하는 관행은 우리 법에서도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AI 학습 허락 여부”라는 단일 항목을 넘어 데이터 취득 경로, 학습과 출력의 허용 범위, 권리정보의 보존, 이용내역의 확인 방법을 계약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도 관리 저작물과 문제 된 입력·출력 자료를 연결할 기록을 확보하고, 법정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침해 전 등록 요건(제125조의2 제3항)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한다. Bartz 결정이 학습과 불법 취득을 나누어 평가하였다면, 이 사건은 그 행위별 평가를 가사의 출력과 권리정보 처리에까지 이어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참고자료

-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 (9th Cir. 2001).
- Bartz v. Anthropic PBC, 787 F. Supp. 3d 1007 (N.D. Cal. 2025),
- BMG Rights Management (US) LLC v. Anthropic PBC, No. 5:26-cv-02334-EKL (N.D. Cal.).
- Concord Music Group, Inc. et al. v. Anthropic PBC, No. 5:24-cv-03811-EKL (N.D. Cal.); No. 5:26-cv-00880-EKL (N.D. Cal.).
- Cox Communications,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607 U.S. ____ (2026)
- Kadrey v. Meta Platforms, Inc., 788 F. Supp. 3d 1026 (N.D. Cal. 2025).
- Round Hill Music LP v. Anthropic PBC, No. 5:26-cv-08505 (N.D. Cal.).
- Sony Music Publishing (US) LLC et al. v. Anthropic PBC et al., No. 5:26-cv-09217 (N.D. Cal.), Complaint and Demand for Jury Trial, ECF No. 1 (Aug. 28, 2026).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ay 2025).